

#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흐름도(공항 입국자용)

<방대본 해외출입국관리팀, '21.12.3.(금)>

- ◆ PCR음성확인서를 미소지(부적합 포함)한 내·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
  - \* 단, 입국 후 PCR음성확인서 부적합 등이 확인된 경우, 내국인은 시설격리 5일(비용 자부담)+자가격리 5일, 외국인은 입국불허 조치됨
  - ※ PCR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은 공지사항 내 'PCR음성확인서 제출 FAQ' 참고
- ◆ 오미크론 변이 유행국가 시설격리 조치, 아프리카 5개국\* 입국자 진단검사 등 강화('21.11.28.~)
  -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 9개국\* 5일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불허('21.11.28.~)
  - \* 남아공, 보츠와나, 짐바브웨, 나미비아, 레소토, 에스와티니, 모잠비크, 말라위, 나이지리아(12.3.~)
- ◆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-> 한시적(2주간)으로 '모든 국가/지역' 지정('21.12.3.~12.16.)
  - 예방접종완료자라도 10일간 의무 격리
- ※ 오미크론 변이 발생 관련 대상국가 및 입국불허 등 조치사항은 변동 가능함(변동시 재안내)

## 유증상자



## 무증상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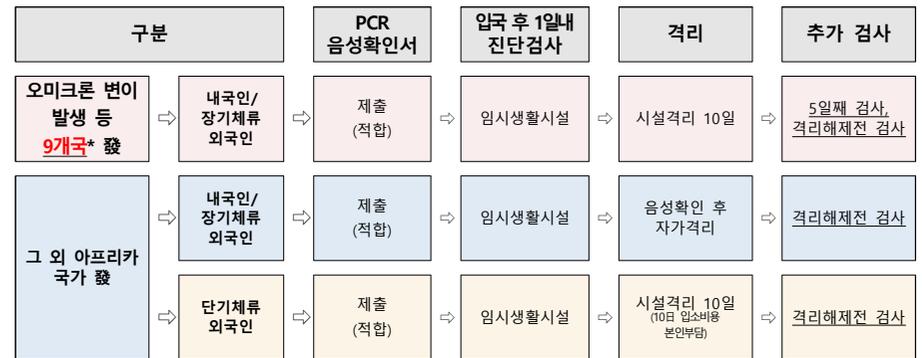
### ○ 일반 국가 5개국\* 입국자



- 1)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종완료자로, COOV(쿠브)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접종스티커로 증빙이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함
    - \* 국내1회+국외1회 접종완료자의 경우,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1-2차 접종력이 모두 확인된다면, '국내 예방접종완료자'로 간주함(국내 시스템 등록 및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)
  - 2)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종완료자로, COOV(쿠브)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확인서로 증빙이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함(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조치 적용)
    - \* 입국 당시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쪽 '해외 접종이력 등록 안내' 참고
- ※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(nip.kdca.go.kr) 또는 정부24(www.gov.kr)에서 출력 가능하며, 예방접종확인서는 보건소에서만 발급 가능함

※ 1), 2) 대상자의 경우, COOV앱 등으로 증빙 가능한 경우 대중교통 이용 가능함

### ○ 고위험국가 5개국\* 입국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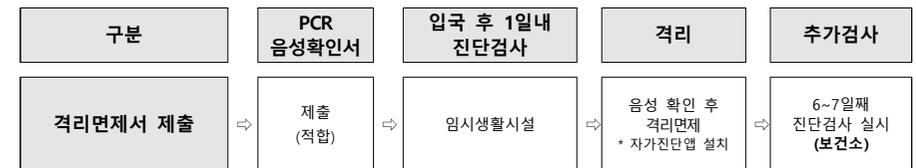


\* 남아공, 보츠와나, 짐바브웨, 나미비아, 레소토, 에스와티니, 모잠비크, 말라위, 나이지리아

### ○ 격리면제서 소지자

☞ 세부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「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」에 따름

※ A1(외교)·A2(공무)·A3(협정) 비자소지자 또는 입국 전 한국대사관(또는 관계부처)에서 '격리면제서'를 사전발급 받은 경우 등



※ A1(외교)·A2(공무)·A3(협정) 비자소지자 등 '격리면제서' 발급이 불요한 격리면제자는 전원 임시생활시설에서 PCR검사 실시(아프리카 5개국\* 입국자는 '음성' 확인시까지 임시생활시설 대기해야함)

□ 해외 접종이력 등록 안내(입국 당시 미등록된 경우)

구 분	입국시	접종 이력 등록	증명서 발급 (보건소)	등록 후	재입국시
해외예방접종완료 내·외국인 (격리면제서 소지)	격리면제 *자가격리앱 설치	관할 보건소 방문 등록	예방접종확인서	격리면제 유지	격리면제 *격리면제서 불필요
해외예방접종완료 내·외국인(한국 국적자) (격리면제서 미소지)	격리 *자가격리앱 설치	관할 보건소 방문 등록	예방접종확인서	격리 유지 (입국후 10일간 격리)	격리면제 *격리면제서 불필요
해외예방접종완료 외국인(외국적자) (격리면제서 미소지)	격리 *자가격리앱 설치	접종이력 등록 불가	-	-	격리대상 *격리면제서 소지시 격리면제 가능
국내1회+국의 1회 내·외국인	격리 *자가격리앱 설치	관할 보건소 방문 등록 *등록 즉시 격리면제	예방접종증명서	격리면제 전환 *자가격리앱 삭제	격리면제 *격리면제서 불필요

※ 상기 대상자의 경우, 관할 보건소에서 해외 접종이력을 등록\*하여야 하며 등록 이후 확진자 밀접접촉시,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 가능

\* ①성명, ②생년월일, ③백신종류, ④접종일, ⑤접종기관명, ⑥접종기관 또는 해당 국가 보건당국의 직인 등을 포함한 문서화된 자료.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,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서류(개인 번역본은 공증기관 인증 필요)를 함께 제출해야 함.

※ 국내 시스템 등록 후 재입국 시, 검역단계에서 COOV앱 또는 국내에서 발급 받은 예방접종확인서 (예방접종증명서) 제시하여 예방접종완료자임을 증빙하여야 함(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입국시 격리면제 불가)